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6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103,000	148,138	79,647	-
2인	6,719,000	243,833	181,659	247,763
3인	8,575,000	309,777	264,935	318,043
4인	10,392,000	374,300	338,641	390,974
5인	12,091,000	457,613	435,046	490,306
6인	13,690,000	535,512	525,833	584,741
7인	15,225,000	584,741	579,249	634,423
8인	16,759,000	634,423	628,429	712,921
9인	18,294,000	712,921	697,282	838,330
10인	19,829,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수는 4명(조모 제외)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가구원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